

가 락 시 장
2016년도 1차 회의

I·SEÒUL·U
너와 나의 서울

가 락 시 장
시 장 관 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개 최

2016. 3. 30(수)


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

부 의 안 건

(보고 안건)

제1호. 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화(표준하역비) 추진 1

제2호. 가락시장 도·소매 기능 분리 추진 4

(서면 보고)

제3호. 코다리명태 소송 경과 보고 7

(추진 안건)

제1호. 생산자·출하자 협의회 구성·운영 보고 · 9

제2호.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(안) · 12

제1호 보고안

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회(표준하역비) 추진

2016. 3.

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(유통물류팀)

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화(표준하역비) 추진

① 도입 목적(농림부 표준하역비 부담방안('01.7))

- 하역비의 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여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
-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물류선진화 기반 구축 및 수수료 징수 체계의 단일화로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

§ 표준하역비 :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

② 추진 경위

- '00.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
 -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('02.1부터 시행)
- '01.12 표준하역비 시행대상품목 단계별 추진(가락시장)
- '04.01 표준하역비 확대 시행(96개 품목→국내산 포장 출하품)
- '12.08 서울시, 표준하역비 운영 개선 조치 - 시정명령
- '12.08~ 단일수수료 체계 도입을 위한 실무·대표자 회의(22회)
- '12.~'15 단일수수료 체계 도입을 위한 개설자 업무검사 지적

③ 운영상 문제점

- 표준하역비 도입 목적 미달성
 - '02년 표준하역비 도입 시 연착륙을 위해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관행 성립, 14지난 현재까지 미 시정
 - 현행 징수체계 지속 시 매년 1.8% 수준의 하역비 인상액을 위탁수수료로 인상하여 출하자에게 계속 전가
 - 도매시장법인 하역·물류개선을 위한 주체적 역할 미수행

- 위탁수수료 징수체계가 이중 구조로 위탁수수료 징수방법 부적정 및 출하자 혼선 초래
 - 현행 징수체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(4%)에 하역노조에서 청구한 표준하역비 청구내역(정액)을 합산하여 결정
 - 위탁수수료율 시세 등에 따라 상시 변동(4~7%)
- 표준하역비 관련 민원 지속 발생 등
 - '07.04 산지유통인연합회, 무 표준하역비 부당징수 시정요구 민원
 - '12.01 밀양 깻잎 출하자 표준하역비 민원 제기
 - '14.11 성주 참외 출하자, 하역비 위탁수수료 포함 정률제 도입 민원

※ 도매시장법인은 단일화(안)시행 시, 비용 증가 및 하역 노조에 대한 '사용자' 역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추진에 반대

4 개선 방향 : 단일 수수료 체계 도입

편의점

위탁수수료(변동) = 4%(이전 위탁수수료) + a(표준하역비 정액)

- 하역비 인상 시 이중 수수료 구조로 a 계속 상승하여 출하자 부담 지속 증가, 징수방법 부적정, 출하자 혼선 초래

편의점

위탁수수료(고정) = (4+a)%(위탁수수료율 + 표준하역비 정율)

- 정액의 표준하역비 정율로 환산하여 단일 수수료 체계 도입
- 하역비 인상하여도 단일 수수료 체계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

5 추진 계획

- 위탁수수료 요율단일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('16.03~06)
 - 법인별 의견 수렴 및 세부 추진방안 확정
- 산지·출하자 홍보 및 요율 단일화안 시행('16.하반기~)

제2호 보고안

가락시장 도·소매 기능 분리 추진

2016. 3.

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(농 산 팀)

가락시장 도·소매 기능 분리 추진(안)

① 추진목적

-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목표인 도소매 분리를 통한 도매기능 극대화
- 가락몰(소매권역)과 도매권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

②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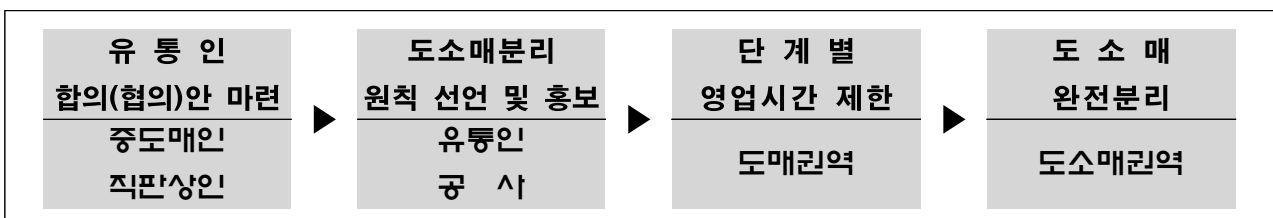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 도매권역의 낮시간대 영업시간 조정을 통해 소매행위 근절
- 중장기적으로 도매권역 모든 출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

③ 추진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

- 도매시장 내에서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미비
 - ➔ 현 24시간 영업시간제를 단계별 단축
- 도매권역 소매행위는 30년간 누적된 관행으로 일시적 정비 곤란
 - ➔ 단계적·점진적 접근 필요
- 중도매인과 직판상인 간 이해관계 상충
 - ➔ 도소매권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은 소매행위 근절, 직판상인은 직접수탁 근절 추진
- 노점상 등 무허가상인 영업시간 조정 반발
 - ➔ 대체 영업장소 이전 등 대안의 검토 및 실행 준비

④ 추진방안

【 추진절차 】



도매시장 기능 고도화
도매권역과 가락물 권역의 상생발전

<< 단 기 >>
 낮시간 소매행위 단계적 영업시간 조정
 불·탈법 행위 단계적 정비
 유통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

<< 증장기 >>
 도매권역 출입자 관리 시스템 구축
 → 시장 출입 등록 카드제
 도매거래 시간대 외 출입문 폐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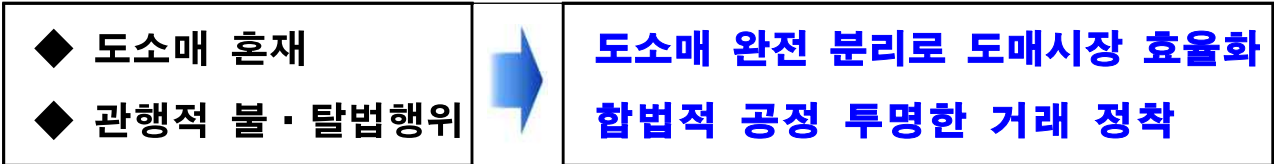
【 단기대책 】

- 도매권역의 단계적 영업시간 조정을 통한 점진적 소매행위 근절
 - 시설현대화 도매권역사업 추진과 함께 단계별 영업시간 제한
- 도매권역 불·탈법 행위 단계적 정비
 - 중도매인 점포전대·제자리 이탈 영업, 매매참가인 장내영업, 무허가 상인(노점상) 영업행위 등 점진적 정비
- 도소매권역 유통인 상생 협력 발전 방안 마련
 - 도매권역은 소매행위 근절, 임대상인은 직접 수탁행위 근절

【 증장기대책 】

- 도매권역의 모든 출입자 관리 시스템 구축(시장출입등록카드제)
 - 시설현대화 완료시점에서 구매자, 출하자, 시장내 유통인, 관련 사업자, 시장 방문자·견학자 등 ID카드 발급 및 출입통제
- 도매거래 시간대 외 출입문 폐쇄
 -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에는 도매거래 시간대 외 출입문 폐쇄

5 미래 가락시장 비전



제3호 서면 보고

코다리명태관련 소송 경과 보고

2016. 3.

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(수 산 팀)

코다리명태 상장애외품목 지정취소 소송 경과 보고

1심 선고 : 서울시 승소('16.2.4)

- 상장애외품목의 지정 및 거래허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,
- 코다리명태 상장애외품목 지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

서울건해산물(주) 항소('16.2.23)

2016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('16.2.29)

2016년 코다리명태 상장애외품목 집행정지 인용('16.3.4)

-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코다리명태 상장애외품목 지정 효력 정지

서울시 즉시 항고('16.3.14)

공사,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참가('16.3.17)

제1호 추진안

생산자·출하자 협의회 구성·운영

2016. 3.



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(유통물류팀)

생산자 · 출하자 협의회 구성 · 운영

① 추진 목적

-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생산자 · 출하자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 정책 및 도매시장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도매시장 유통환경 개선 및 출하자 이익 도모

②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

③ 주요 기능

- 출하자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협의
-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 촉진에 관한 사항 협의
-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협의
- 수수료, 하역비 등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
- 산지 유통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협의
-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 및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협의

④ 협의회 구성

- 구성 형태 :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
- 구성원(19명) : 농·어업인 단체, 농협·출하단체 등(임기 2년)
※ 1대 협의회 회장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선출(2.23)

⑤ 협의회 운영

- 운영 : 분기 1회 정례회(필요시 수시 개최)
- 공사 사장, 유통본부장 회의 참석, 관련팀장 배석(간사:유통물류팀장)
-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사에서 처리 후 협의회에 보고

생산자 · 출하자 협의회 회원 명단

	대 상	대 표	품 목
1	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	김진필	-
2	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	강 용	-
3	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	김성응	-
4	농협밀양시연합사업단	하영택	과채류(동절기)
5	강원농협연합사업단	지윤용	과채류(하절기)
6	부여군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	김동일	과채류
7	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	장기수	참외
8	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	박진석차장 (직무대행)	감귤
9	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	안성기	복숭아
10	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	박해근	포도
11	이천 울면농협	박병건	상추
12	전남 서남부채소농협	전영남	양파
13	대관령 원예농협	유영환	감자
14	충북 원예농협(한국과수농협연합회)	박철선	사과 · 배
15	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	백현길	무 · 배추
16	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	임장섭	수박
17	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	김재만	-
18	가락시장 전국출하주협의회	황정열	패류
19	한국수산물유통협회(수산물수입분과위원회)	이형걸	냉동수산물

제2호 추진안

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 구성 · 운영안

2016. 3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SEOUL AGRO-FISHERIES & FOOD CORPORATION

(건설계획팀)

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 구성 · 운영(안)

《 목 적 》

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유통 · 물류 개선 및 시장 이용자들의 시설사용 편리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최적의 채소2동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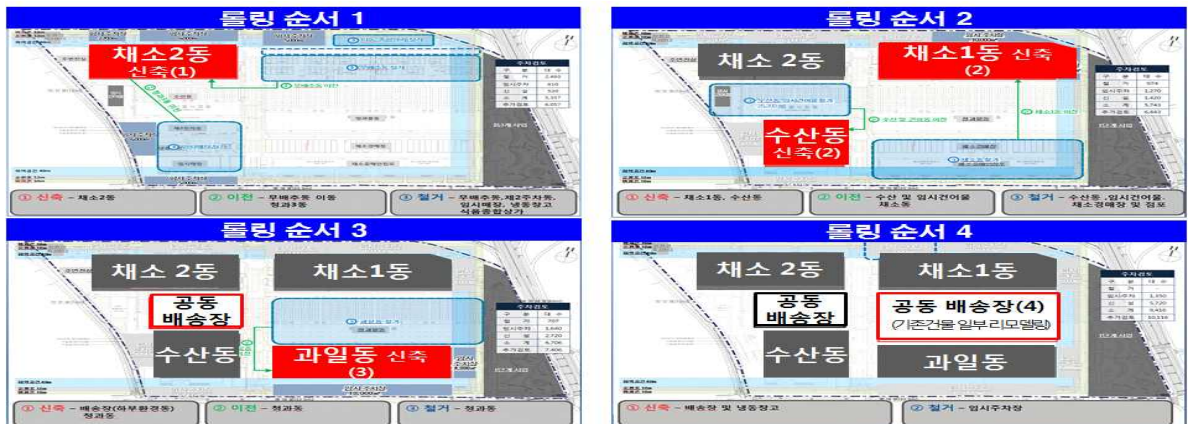
I 그동안 추진 내용

□ 도매권역 건설기본계획(마스터플랜)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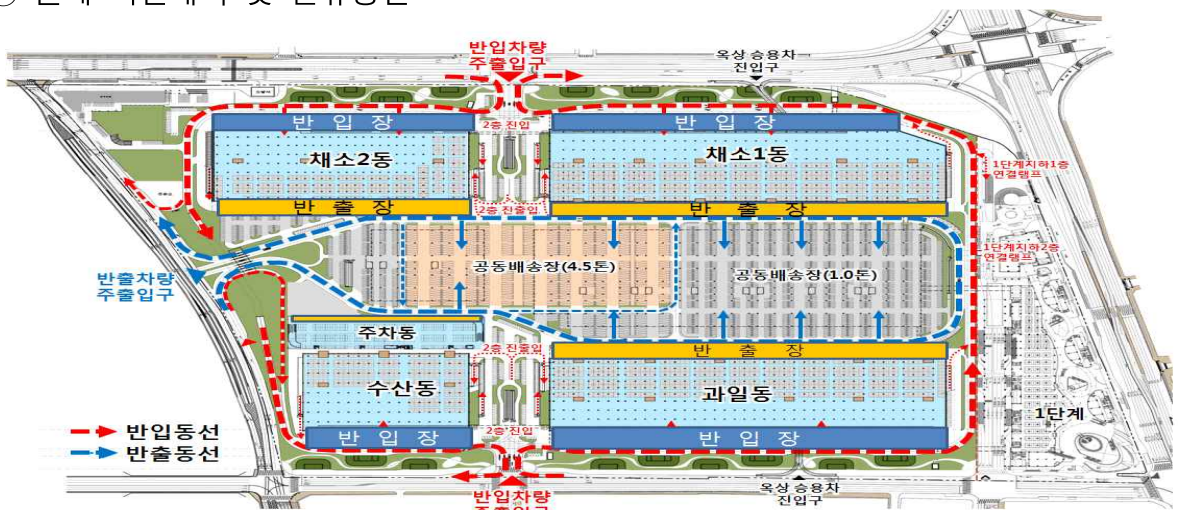
○ 기 간 : '14.5월 ~ '15.2월

○ 주요 내용 : 순환개발 계획, 전체 시설배치 및 물류동선, 전체/동별 시설규모 확정

① 단계별 순환 개발 계획



② 전체 시설배치 및 물류동선



③ 전체/동별 시설규모

계	채소2동	채소1동	과일동	수산동	기 타
302,201㎡	55,903	79,719	89,183	61,961	15,435

○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: 각종 위원회 운영, 공청회, 설명회 개최 등

구 분		위 원 회 구 성	운 영
위 원 회	유통인 실무추진반	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조합 실무자 27명	13회
	전문가 자문위원회	유통, 물류, 건축, 디자인 전문가 5명	2회
	지역주민위원회	지역주민 위원 15명	8회
	시설현대화 T/F	농식품부, 해수부, 서울시, 공사 관계자 6명	3회
의견수렴 및 설 명 회	공 청 회	도매법인, 중도매인, 출하자 등 200여명	1회
	유통인	도매법인, 중도매인조합장, 전체 중도매인	46회
	출하자	출하자 단체	3회

II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(안)

운영 목적

○ 도매권역 단계별 순환개발 계획, 전체 시설배치 및 물류동선, 전체/동별 시설 규모 내에서 선도사업인 채소2동의 설계를 위한 사안별 구체적 의견수렴 필요

근 거

○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(시장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)
※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

운 영

○ 운영 기간 : 설계 완료 시까지(필요시 시공, 이전/재배치 단계까지 연장)
○ 주요 협의사항
- 시설배치 계획(거래제도별 위치, 경매장, 점포, 통로, 반출입장, 저온창고 등)
- 물류계획(물류동선, 램프, 임시주차장, 전동차 보관장소 등), IT/설비 계획 등
○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2단 구조로 운영

〈 채소2동 설계추진 협의회 〉

- 위원장 : 유통본부장 (간사 : 건설계획팀장)
- 위 원 : 유통인, 출하자, 구매자 대표 23명

구 분	구 성	구성 방법
유통인 (15명)	▶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대표 ▶청과 부류별 중도매인조합장 6 한중연 1, 정산조합 1, 특수품목 1	각 유통인단체 대표
출하자 (4명)	▶주요 품목별 대표 출하자 (배추, 무, 양배추, 양파, 파, 마늘 등)	산지유통인연합회 생산자 단체 추천 또는 공사 위촉
구매자 (4명)	▶납품업체, 전통시장, 중소슈퍼마켓, 대형 마트 등 주요 구매자 중 적임자 위촉	구매자등록자 중 위촉

※ 유통인 위원은 단체장 변경시 위원 승계

※ 과일중도매인조합은 해당 안전 협의회 참석

- 운 영 : 논의 안전에 따라 전체 회의 또는 대상자별 회의 등 탄력적 운영
※ 논의/협약사항 설계 반영을 위해 설계관리팀(설계업체) 위원회 운영에 참여
- 회 의 : 격월 정례회(필요시 수시회의 개최)
- 기 능 : 공통적이고 중요한 사항 논의 및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 추진

〈 채소2동 설계 실무협의회 〉

- 위원장 : 현대화사업단장(간사 : 건설계획팀장)
- 위 원 : 품목별·사안별 해당 유통인, 출하자, 구매자
- 회 의 : 사안별 수시 개최
- 기 능 : 품목별·사안별 구체적 협의(협의 결과 설계추진협의회에 보고)

→ 설계추진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

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 주요 논의/협의사항

구 분	주요 논의/협의 사항
채소2동 이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채소2동 이전 품목 선정 ② 채소2동 이전 대상자 선정
시장도매인 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취급 품목(김장·양념류 vs 과일류까지 확대 여부) ② 참여 대상(외부 공개모집 여부 및 모집 비율) ③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 비율
경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인별·품목별 구획 방법 ② 경매장 면적, 층고 등 ③ 온도조절(저온경매장) 범위 ④ 경매장까지 물량 반입 방법 ⑤ 연도별 하차경매 계획 ⑥ 수직물류(수직반송기 등) 설치 여부
중도매인점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점포, 통로, 사무실(중2층) 면적 ② 품목별 점포 배치 형태 ③ 법인별/품목별 구획 위치
반입/반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반입/반출장 구성 방안 ② 고객분류장, 포장가공장 위치, 면적 등 ③ 파렛트 하차 의무화 여부
운영/물류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상장예외품목 운영 여부 ② 콜드체인 운영 방안 ③ 물류동선(반입~반출) ④ IT 설비 계획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물류장비 보관 및 충전소 위치 ② 현장사무실 위치 ③ 임시주차장 위치 및 규모 ④ 컨테이너 적치 장소 등